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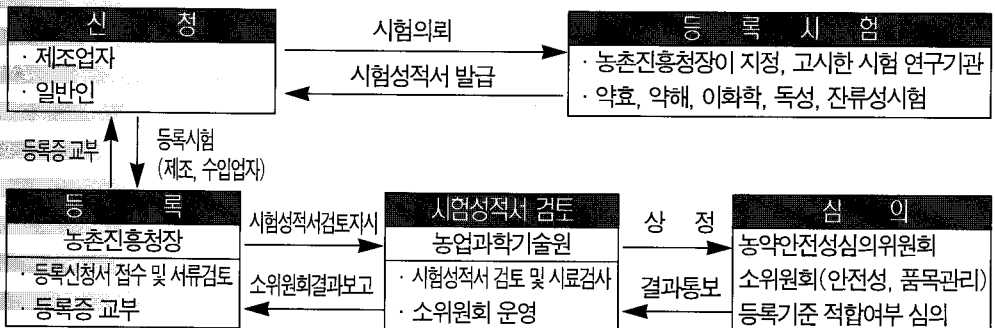
각종 안전성시험 통과 후 농약안전성심의 통과 거처야

농촌진흥청에 등록, 인축·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

홍보부

우 리나라는 아직 새로운 농약원제를 많이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 선진외국에서 각종 시험과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거친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원제를 수입하거나 외국의 특허기간이 끝난 국산 합성원제를 이용하여 농약제품을 생산하고 있다. 농약제조회사는 품목등록을 위해 국내의 재배작물, 기후 및 토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약효, 약해 등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1년차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하고 2년차 최종시험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국·공립시험연구기관에 각각 시험신청을 한다. 이 시험이 끝나면 약효, 약해 및 잔류성과 독성시험성적서 등 각종 안전성 자료를 농촌진흥청에 제출, 이들 자료는 철저한 검증을 받는다. 검증 결과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소위원회(안전성소위원회, 품목관리소위원회)에 상정되어 등록에 적합한지를 검토받는다.

◇ 농약 품목등록시험 및 등록 흐름도



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각 소위원회로부터 상정된 품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정되면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품목의 등록증을 발급한다. 이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은 역시 독성, 잔류성 등 인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. 농약 제조회사는 농촌진흥청에 품목 제조등록을 하며 등록증에 표시된 규격 및 함량에 맞는 농약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된다. 결국 정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은 생산도 공급도 할 수가 없다.

농약은 또 개발과정에서부터 사용자는 물론 농작물, 농산물 소비자, 환경에 대한 안전을 집중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정밀화학제품이다. 그럼에도 이들 농약이 국내의 기후, 토양 등 자연조건 및 재배작목

'농약설명서' 최대 안전성 확보위한 마지막 지침, 꼭 지켜야

등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국내시험을 최소한 3년이상 실시한 후 이상이 없어야 국내 농약으로 등록된다. 농약사용 설명서는 이와같이 개발 및 시험과정에서 확인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약해가 없고 우수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사용법, 주의사항, 희석배수, 사용량 등은 물론 불의의 중독사고 발생시의 해독방법, 농약의 독성정도 등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어 반드시 이 지시사항을 지켜야만 중독사고 없이 충분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. 물론 농약잔류 우려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. **농약정보**

◇ 농약포장지(라벨)의 주요 표시사항

표시사항	표시내용
독성	○ 독성의 정도에 따라 맹독성농약, 고독성농약, 보통독성농약, 저독성농약이라 표시하고 글자색깔은 맹독성농약과 고독성농약은 적색으로 표시 ○ 맹·고독성 농약과 흡입독성이 강한 농약은 상단 중앙에 백골그림으로 위험을 표시 ○ 어독성 I 급 및 II 급으로 분류된 품목은 독성, 잔류성을 표시한 우측 또는 밑에 () 하여 표시하되 어독성 I 급은 적색글자로 표시
상표명 또는 품목명	○ 상표명 또는 품목명은 제형을 동시에 표시 ○ 상표명이 없는 농약은 품목명 사용
약제의 용도구분 색깔	○ 약제의 용도에 따라 바탕색깔을 다음과 같이 구분 살균제 = 분홍색, 살충제 = 녹색, 제초제 = 황색, 생장조정제 = 청색, 맹독성농약 = 적색, 기타약제 = 백색, 혼합제 및 동시방제제 = 해당 약제색깔 병용
약제의 적용대상 표시	○ 약제의 적용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- 원예용(수도용)살균제(살충제, 살균·살충제, 생장조정제) 또는 살균제, 살충제, 살균·살충제, 생장조정제 - 논(밭, 과원, 잔디, 산림)제초제 또는 제초제 - 식물진멸약은 "작물에 근접살포 엄금" 이라는 경고문구를 망치리 인쇄로 표시
대상작물, 적용병해충, 사용량 및 사용시기	약효, 약해, 수확물의 안전등의 시험결과에 의해 가장 안전한 상태를 표시
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	○ 안전사용기준 : 수확물의 농약잔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수확전 최종사용시기와 최대사용 횟수를 표시 ○ 취급제한기준 : 맹·고독성 농약의 취급시 취급자의 중독사고 예방과 수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급방법을 표시
내용량	○ 분제, 입제, 수화제 등 고체성농약은 중량단위(g, kg 등)로 표시 ○ 유제, 액제 등 액체성 농약은 용량단위(ml, l)로 표시
성분	○ 유효성분과 기타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
특징	○ 약제의 계통분류 및 작용기작 상의 특성을 표시
주의사항	○ 농약을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필요한 보호장비, 혼용관계, 보관요령 및 그 약제의 고유성질상 사용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을 표시
기타	○ 사용방법, 약효보증기간, 제조모집단번호, 제조(수입) 회사명 및 주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표시